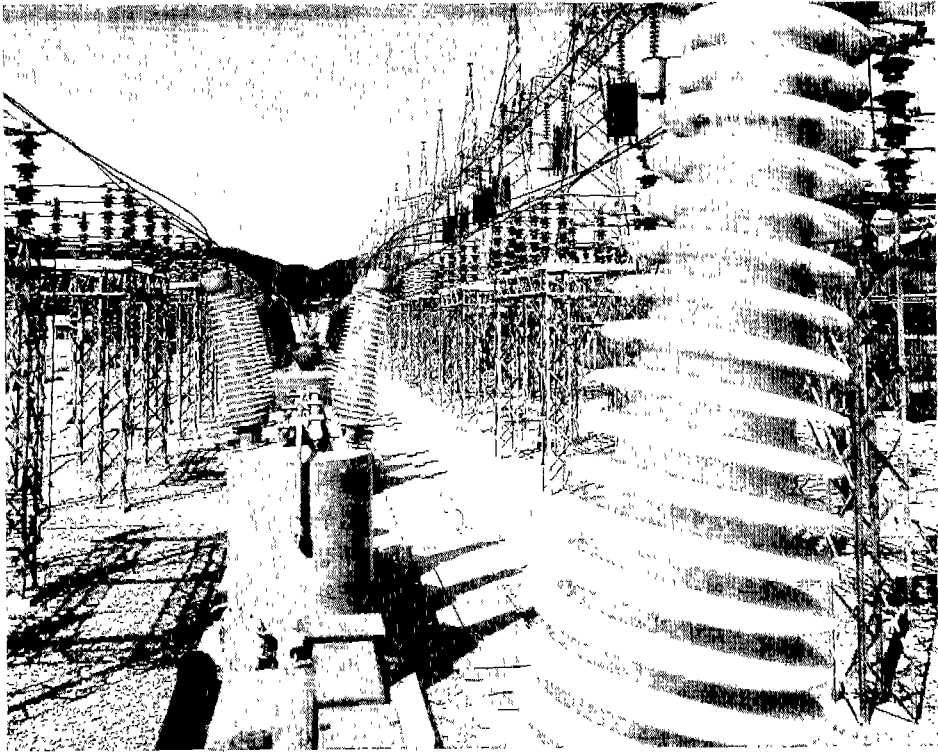


— 입 · 법 · 예 · 고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60년 전력기술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전력기술관리법을
금년 6월 30일 시행하도록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협회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십차례 수렴하여
동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작성하여 100여일 만에 입법예고하면서
5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입법예고된 내용 전체를 협회지에 특집으로 편집하여
신문호외처럼 긴급히 제공하니
면밀히 검토하고 기한내에 좋은 의견을 협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 권용득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4월 23일

통상산업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I.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안)

1. 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공포('95. 12. 30. 법률 제5,13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전력기술진흥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함(안 제4조).
- 나. 통상산업부장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교육훈련 지원,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부설연구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등을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주관할 자와 협약에 의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설계업자, 전기공사업체, 발전사업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매년마다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의 신청에 의해 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전력기술인은 매 5년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감리원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함(안 제14조).
- 바.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의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전력기술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련단체 임·직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
- 사.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력기술인중 1급설계사는 전기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급설계사는 전기분야 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로 정함(안 제19조).
- 아. 설계감리대상 전력시설물을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30만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전기설비 등으로

정함(안 제20조).

- 자. 전기분야 기술사를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로 구분하고 당해 기술사의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차. 공사감리 제외대상을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일반용 전기설비(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은 제외),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 군 특수 전력시설물공사 등으로 정함(안 제23조).
- 카.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자격취득자, 학력·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함(안 제24조).
- 타. 설계업은 종합설계사무소와 전문설계사무소(1종, 2종)로, 감리업은 종합감리업과 전문감리업으로 함(안 제31조).

II.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신기술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대하여는 일정기간(5년~10년)동안 발주자에게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 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간을 전력기술인은 기술등급별로 특급기술자는 14시간 이상, 중급기술자는 21시간 이상, 초급기

술자는 2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감리원의 경우 초급감리원은 35시간 이상, 중급감리원 이상은 21시간 이상으로 정함(안 제14조).

- 다.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으로 정함(안 제16조).
- 라. 설계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종합설계사무소, 종합감리업체 등으로 하고 설계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설계감리자 지정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9조).
- 마. 발주자는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업체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에정가격의 88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9조).

III.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참조:수화력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수화력발전과(☎ 02-500-27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法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電力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電力施設物設置의 적정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확보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電力技術”이라 함은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查·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 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 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關係 施設은 제외한다.</p> <p>2.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와 技能系의 技術資格取得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p> <p>3. “設計”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に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p> <p>4. “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 工事に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 監理業體가 設計圖書 기타 關係</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전력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본다.</p> <p>2.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감리와 완성된 전력시설물의 시험·운용·유지관리·진단·지도·검사·안전성 검토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용접검사 및 정기검사를 제외한다.</p> <p>3.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4. “발전설비”라 함은 터빈·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영 제2조제2호에서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전적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 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수에 따라 發注者의 權限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p> <p>5.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業體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p>	<p>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제어장치 및 전기기계·기구 중 주차단기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원자력·가스 터빈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p> <p>5. “급전설비”라 함은 전력계통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급전소, 개폐소 등의 자동제어설비, 원방감시제어설비 기타 전력계통을 제어하기 위한 전기적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말한다.</p> <p>6. “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등(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된 전기용품중 핏음접속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제3조(전력기술인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第2章 電力技術의 振興</p> <p>第3條(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의 수립)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p>	<p>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p> <p>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p>	<p>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力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2. 電力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 電力技術人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電力技術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電力技術의 情報管理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6. 電力技術을 研究하는 機關 및 團體의 指導·육성에 관한 사항 7. 電力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8.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 9.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p>③ 通商産業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의 重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4條(研究機關등의 육성등)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力技術을 研究·開發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p> <p>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추진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전력기술과 관련한 중요정책등의 조정) 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전력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지원과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재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5條(研究課題의 선정등)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에 관한 研究課題를 선정하고 研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課題의 선정 및 研究할 者의 지정과 研究費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7조(지도 육성 대상 및 방법)</p> <p>① 통상산업부 장관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4. 한국전기안전공사 5.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6. 한국전기연구소 7.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정보 수집·조사·홍보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도 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기술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 지원 3.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p>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등) ① 통상산업부 장관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6條(電力技術의 研究·開發등의 권고) 通商産業部長官은 새로운 電力技術의 研究·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研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研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通商産業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 電力技術人協會 3. 電力技術關聯團體 4. 電力關聯學術團體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구하도록 지정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할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p>제9조(전력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권고를 받고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개</p>	<p>제3조(전력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대상)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전력기술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전기협회 2. 한국전기공사협회 3. 한국전기공업진흥회 4.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p>② 법 제6조제4호에서 "전력관련학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전기학회 2.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3.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발투자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개발투자 등의 계획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10조(신기술의 보호)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이 개발된 때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p> <p>② 신기술개발의 보호·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4. 대한전자공학회 5.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회</p> <p>제4조(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신청)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 전망 5. 기타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제5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전력기술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통상산업부장관은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신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전에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소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⑤ 통상산업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기술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3. 기타 신기술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년도의 신기술 사용실적을 다음 년도의 3월 31일까지 통상산</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신기술의 보호지원) ①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발주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발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 등은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신기술지정시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p> <p>제7조(신기술지정의 취소)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7條(電力技術人力의 관리등)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力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 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p>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서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아야 할 者를 고용하고 있는 使用者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이 그 敎育訓練을 받는데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1조(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p> <p>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전력기술인에 대하여 매년마다 취업 및 퇴직사항을 포함한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p>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사항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의 경력·국가기술자격 및 취업현황 등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지정받은 경우</p> <p>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전력시설물 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전력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입력한 자기디스켓과 이를 출력한 서류 1부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일괄 제출할 수 있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제12조(전력기술인 경력수첩등)</p> <p>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등급의 확인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인 경력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신고·면허등록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확인·해당경력산정기준 보고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전력기술인의 업무정지등)</p> <p>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관리를 위하</p>	<p>제9조(전력기술인의 신고등) ① 전력기술인은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원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p> <p>③ 협회는 경력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전력기술인이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전력기술인 경력확인등)</p> <p>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보유증명서에 의한다.</p> <p>③ 협회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및 전력기</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당해 전력기술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또는 전력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공사 또는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사 면허·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또는 대여받은 때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지방서내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전력시설물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때 5. 공사감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의 시공에 대한 확인이나 실시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p>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p> <p>④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한다.</p> <p>제11조(해당경력 산정기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해당경력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제12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p>제13조(전력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등)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2의 전력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위</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명령에 위반한 때</p> <p>②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력기술인·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제외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2. 감리원 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및 자가용전기설비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4.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체(이하 “공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 	<p>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력기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전력기술인 및 당해 전력기술인이 소속된 업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교육훈련의 내용등) ①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특급기술자 :14시간 이상 2. 기사1급·기사2급·기능사1급·기능사2급자격을 가진 자,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 :21시간 이상 3.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자, 초급기술자 :28시간 이상 4. 감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은 21시간 이상. 단, 초급감리원은 35시간 이상 <p>②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은 전력기술·행정·전력기술과 관련된 법규등 직무교육과 기술인 의식함양을 위한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8條(電力技術審議委員會) ① 電力技術에 관한 다음各號의 사항을審議하기 위하여 通商産業部에 電力技術審議委員會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基準에 관한 사항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전력기술인</p> <p>6.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p> <p>② 전력기술인은 매5년마다, 감리원은 매3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내용·기간은 전력기술인·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전력기술인·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p> <p>제15조(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의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기술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7인 이내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p>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2. 감리원의 교육훈련은 전력 시설물공사의 감리에 관련된 전력기술·행정등 직무교육과 기술인의 의식함양을 위한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5조(교육훈련절차) ① 협회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협회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매년 교육실적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협회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경력수첩에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3. 정부투자기관, 협회, 전력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2인 이내</p> <p>4. 전력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p> <p>② 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별로 지명한다.</p> <p>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3章 電力施設物の設計・監理</p> <p>第9條(電力技術基準) ① 電力施設物の設計・監理・検査・點檢 및 관리에 필요한 電力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p> <p>②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技術基準의 重要내용을 변</p>	<p>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상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p> <p>제18조(의견청취 및 기술검토등)</p> <p>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p>	<p>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10條(技術基準의 遵守)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士는 電力施設物이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 한다.</p> <p>② 監理員은 設計圖書·關聯規程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p> <p>第11條(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등)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가 作成하여야 한다. 다만, 通商産業部令이 定하는 標準設計圖書와 新工法·特殊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一般用電氣設備의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資格取得者 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作成할 수 있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를 作成한 電氣分野技術士·設計士 및 設計業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設計監理를 받아야 한다.</p> <p>⑤ 電力施設物의 設計用役은 設計業者에게 發注하여야 한다.</p>	<p>제19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 1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는 다음 각호의 전력기술인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설계사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계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사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표준설계도서등) ① 법 제 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해 그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 3. 기타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통해 동일공사의 반복시행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p>②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의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p> <p>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2항</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 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0조(설계감리등) ①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 2. 30만볼트 이상의 송·변전 설비 3.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 4. 전기철도의 전력시설물 5. 국제공항의 전력시설물 6.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력시설물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일전문분야의 다른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전기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설계도서는 그 소속된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을 교부 받은 자</p>	<p>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설계사의 면허발급 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의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면허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협회는 설계사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8조(설계감리자 지정기준)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2. 특급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국 전력기술인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설계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설계감리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설계도서의 작성범위등)</p> <p>①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는 설계도서(토목·건축·기계부문설비의 설계도서를 제외한다)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송배전기술사는 전력시설물중 발전·송전·변전·배전·급전·수전·구내배전·전력사용설비 2. 전기기기기술사는 전력시설물중 전기기기·수전·구내배전·비상용발전·전력사용설비 3. 전기응용기술사는 전력시설물중 전기철도·전기응용·수전·구내배전·비상용발전·전력사용설비 4.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전력시설물중 건축물의 수전·구내배전·비상용발전·전력사용설비 5. 전기안전기술사는 전력시설물중 구내배전·비상용발전·전력사용설비 6. 철도신호기술사는 전력시설물중 철도신호설비 7. 설계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전기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소속된 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설계사는 그 수요에</p>	<p>식의 설계감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p>②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 발주자는 전기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p> <p>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 종류별로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의한 설계도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분야기술사(철도신호기술사를 제외한다)·1급설계사는 모든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2. 2급설계사는 10만볼트 미만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3. 철도신호기술사는 전력시설물중 철도신호설비 <p>③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며 설계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설계는 주요설계 수행 지침,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요강의 결정, 설계지침의 작성, 공정표 작성, 공사내역서 및 공사비 견적 등을 말한다. <p>제22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①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 전기사업자는 자체기준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실시 준공 설계도면을 시설물의 폐지시까지 2. 설계업자는 납품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전력시설물 준공후 5년 이상 3. 감리업자는 준공설계도면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p>② 제1항 각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면 또는 설계도</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12條(工事監理等) ① 電力施設物の設置・補修工事發注者(이하“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の設置・補修工事의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施設物の設置・補修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設置・補修工事의 범위 및 監理員의 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電力施設物の設置・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p>	<p>서가 변경될 경우 설계자의 서명날인과 변경된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3조(공사감리 대상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2.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 3.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력시설물공사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기관 또는 공사에 소속된 감리원(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5.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기계부문설비 <p>②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전력시설물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통합하여 공사</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24조(감리원의 자격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별자격기준은 표2와 같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리원자격증(이하 “감리원수첩”이라 한다)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수첩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수첩에 감리원자격을 기록한다.</p> <p>③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0조((감리원수첩의 교부 및 관리)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감리원수첩 교부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첩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리원관리부에 의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감리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감리원수첩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③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감리원수첩 재교부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때에는 감리원수첩을 회수하여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p> <p>④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시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1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 등) ① 감리업체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체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2조(감리실시등) ① 발주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업체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업체를 교체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감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력시설물공사의 규모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④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법 영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공사감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업체와 공사감리게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제25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 ① 감리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중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를 그 공사 착공전에 별표3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의 수와 최소배치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인원이하로 조정·배치할 수 있다.</p> <p>④ 감리원이 상주하는 사업장에는 감리가 종료될 때까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p> <p>⑤ 발주자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변경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담당자(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전기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이 배치된 후에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여</p>	<p>제23조(감리원의 조정등) ① 발주자는 공사에정가격의 88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의 수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배치하는 감리원에 대한 용역대가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체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감리업체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야 한다.</p> <p>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는 공사공정에 따라 감리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감리원의 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6조(감리원의 업무)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 및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면·시방서 및 내역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p>제24조(책임감리원의 경력등) ① 영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은 당해 공사분야에서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관리 또는 감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인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책임감리원:5년 2. 총예정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책임감리원:3년 3. 총예정공사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책임감리원:2년 4. 총예정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책임감리원:1년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관리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감리원이 당해 공사분야의 계획·설계·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경력년수에 산입한다.</p> <p>제25조(감리원의 업무등) ① 영 제26조제1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조사분석 또는 전력시설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보수공사의 기존전력시설물의 검토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검토·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사용자재의 규격·적합성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p>제27조(감리원의 관리)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를 위하여 감리업체는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매반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리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학력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p>② 발주자는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감리원이 배치된 때와 감리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감리원수첩에 사업명·감리기간·담당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확인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현황에 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일지 작성 및 부대업무 <p>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상주감리하는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현황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입력한 자기디스켓과 이를 출력한 서류 1부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령 (안)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안)
	<p>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④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의 경력·국가기술자격 및 취업현황등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28조(설계사·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사·감리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전기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전기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제29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p>	<p>② 협회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체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체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회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감리원 보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및 보유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p> <p>제27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①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3과 같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전력시설물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전력시설물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 없이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7.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 자격증을 대여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10. 공사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발생원인이 감 	<p>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p> <p>제28조(업무정지등의 통보)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영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감리원 및 당해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업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13條(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等)</p> <p>① 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 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電力 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を 施工하는 경우에는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監理員이 工事業者에게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p>	<p>리용역부실로 판단될 때</p> <p>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④ 감리업체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체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30조(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9조(부실감리원에 대한 조치)</p> <p>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인적사항 및 부실감리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협회는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서에 업무정지기간 동안 제1항의 부실감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p> <p>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공상태확인 및 검토사항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후 경고 2.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후 주의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工事의 發注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④ 發注者는 監理員으로 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등)</p> <p>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力施設物의 設計業(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2.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종류와 種類別 登錄基準·營業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③ 設計業 및 監理業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定한다.</p> <p>④ 設計·監理의 用役代價는 通商産業部長官이 定하여 이를 告示한다.</p> <p>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資格取得者를 代表者로 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活動主體로 申告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1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과 영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감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5와 같다. <p>②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規定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을 준</p>	<p>제31조(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p> <p>① 법 제1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설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 등록신청서,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5항단서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증 사본) 2. 영 제3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관련자격수첩사본 3.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그 소유·전세 또는 임차관계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의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용한다.</p>	<p>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 보유현황(감리업체에 한한다) 4.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공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고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2조(설계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중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업체명 2. 설계업체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3.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의 소속부서명·이름 및 서명 날인</p> <p>4. 설계자의 자격·면허번호</p> <p>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가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을 설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그 건축물에 설치될 전력시설물의 종류·위치 등 전력시설물의 설계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제33조(등록증의 게시등) ① 설계업체·감리업체(이하“업체”라 한다)는 주된 사무실내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업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 기술인력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 사업계획서 8. 계약 체결현황, 기술인력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p>제34조(등록변경신고등) ① 영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업체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종과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협회는 업체의 등록변정신고가 있을 경우 별지 제35호 내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업체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5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p> <p>① 업체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업체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통상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p> <p>②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통상 산업부장관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은 때. 다만,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찾을 때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때 <p>제36조(등록취소등의 공고) 통상 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7조(등록취소등을 받은 업체의 업무계속)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第15條(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p>第16條(登錄의 取消·營業停止) 通商産業部長官은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p>	<p>제32조(검직금지) 감리원은 그 소속 감리업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업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38조(영업의 휴업등 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증 첨부)를 통상산업</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取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3. 設計 또는 監理業務遂行중 他人에게 人命 또는 財産상의 被害를 끼친 때 4. 第15條第1號 내지 第4號의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 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6. 他人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p>第17條(休業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시 그 신고의 무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계인 2.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3.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그 밖의 경우에는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p>第4章 韓國電力技術人協會</p> <p>第18條(韓國電力技術人協會의 設立) ①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人 등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電力施設物의 質的向上과 電力技術人의 品位維持·業務改善·教育訓練·指導 및 관리를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電力技術人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p> <p>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 協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p>		<p>제4장 한국전력기술인협회</p> <p>제39조(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의 회비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금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 5. 기타수입금 <p>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등) ① 법</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成立한다.</p> <p>④ 協會의 定款 기재사항, 운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通商 産業部승으로 정한다.</p> <p>⑤ 協會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19條(사업) ①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力技術人의 經歷確認 2. 電力技術人·設計士 및 監理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3. 電力技術에 관한 調査·研究·開發·出版 및 弘報 4. 電力施設物의 診斷·技術指導 및 事故調査 分析 5. 附設技術研究院의 設置運營 6.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解任 申告業務 7. 會員의 업무수행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보장 및 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資등을 위한 共濟事業 8. 기타 通商産業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p>②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의 重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내용·共濟金·共濟料등 共濟事業의 운영에</p>		<p>제18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의 正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자격·가입·탈퇴·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지부·분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p>② 正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通商産業부장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1조(지도·감독) ① 通商産業부장官은 協會를 지도·감독한다.</p> <p>② 協會는 다음 사항을 通商産業부장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 또는 이사회 의 重要의결사항 2. 會員의 實態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協會와 會員에게 關係되는 重要한 사항 <p>③ 協會는 正관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通商産業부장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第20條(會員) ①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協會의 會員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者·監理業者와 그 業體에 소속된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 2.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로 選任된 者 3. 電氣工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事業體에 소속된 電力技術人 <p>② 第1項의 規定에서 정한 者외의 電力技術人도 申請에 의하여 會員이 될 수 있다.</p> <p>第21條(任員) ① 協會의 任員은 會長 1人, 副會長 2人을 포함한 10人이상 2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2人으로 한다.</p> <p>② 會長 및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會長 및 常勤任員은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會長·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며, 각각 連任할 수 있다.</p> <p>第22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아니면 그 명칭에 “韓國電力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補 則</p> <p>第23條(監督)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 등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및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第24條(祕密維持) 이 法에 의하여 設計 또는 監理를 행하는 者は 業務상 알게 된 祕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電力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25條(聽聞)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26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通商産業部令이</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 칙</p> <p>제33조(의견진술의 절차) ① 통상 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4조(권한의 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42조(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인건비등 제</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고자 하는 者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士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 3.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고자 하는 者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p>第27條(權限의 위임 委託) 通商産業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p>	<p>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술인의 현황신고서 및 기술자격취득·변경사항의 접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의 면허발급 3.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의 접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체의 휴업 등의 신고의 접수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확인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지정신청의 접수 8.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업무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현황신고서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업무 	<p>반비용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罰 則</p> <p>第28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2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監理를 發注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 工事中止 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 칙</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p> <p>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監理를 業으로 한 者</p> <p>5. 設計業者 또는 監理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을 받고 그 營業停止 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p> <p>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된 祕密을 누설 하거나 盜用한 者</p> <p>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함에 있어 技術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p> <p>2.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한 者</p> <p>3.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p> <p>4.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用役을 發注한 者</p> <p>5.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한 者. 정당한 사유없이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第30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正當한 사유없이 기피한 者</p> <p>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經費를 부담하지 아니</p>	<p>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에 署捺印을 하지 아니한 者</p> <p>4.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義務를 위반한 者</p> <p>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休 業·再開業 또는 閉業의 申 告를 하지 아니한 者</p> <p>6. 第22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韓國電力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 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賦 課·徵收 한다.</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 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通商産業部長官에 對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 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 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 한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通報하여 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p> <p>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 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 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p>	<p>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 태료의 금액은 별표6과 같다.다 만,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위 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 나 가중할 수 있다.이 경우 가 중부과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職員과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p>附 則</p>	<p>부 칙</p>	<p>부 칙</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施行한다.</p> <p>第2條(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大韓電氣技師協會(이하 이 條에서 “技師協會”라 한다)는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技師協會는 이 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技師協會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承繼한다.</p> <p>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電氣</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시행령의 개정) ① 전기공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를 삭제한다.</p> <p>②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를 “신고서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p> <p>제21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로 한다.</p> <p>③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의 기술분야 4 전기의 기술사란중 “철도신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와 “전기안전”을 각각 신설하고, 기술분야 10.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한다.</p> <p>7.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신고필증사본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계약서사본(감리원수첩사본을 포함한다)</p> <p>8.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건축허가증사본과 건축허가증 또는 신고수리필증사본 제41조중 “신고수리서사본”을 “신고수리사본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최종보고서사본(공사감리대상에 한한다)”으로 한다.</p> <p>제63조제1항중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의 경우</p>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p>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 電氣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7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事實을 通商産業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事實을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申告하여야 하며”로 한다.</p> <p>第4條(設計·監理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電力施設物에 관한 設計·監理를 施行하고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設計·監理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p>	<p>설비”와 기술분야 19. 안전관리의 기술사관중 “전기안전”을 각각 삭제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서 1. 가. 기술분야 건축의 기술사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p> <p>제3조(전력기술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은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p> <p>제4조(설계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업체는 1997년 6월30일까지는 이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에 소속된 설계사(설계사면허를 취득한자를 말한다)는 그 업체가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에 한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당해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제5조(감리실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로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에는 시·도지사에게 “를 “한국 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기술분야 4.전기의 자격종목란중 “철도신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와 “전기안전”을 각각 신설하고,기술분야10.건축의 자격종목란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기술분야 19.안전관리의 자격종목란중 “전기안전”을 각각 삭제한다.</p>

전력기술인의 범위(제3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가. 기술계 전력기술인

종류 및 등급 기술분야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전기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철도신호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나. 기능계 전력기술인

종류 및 등급 기술분야	기능장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보
전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설비	전기기기 전기공사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철도신호	전기기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등급의 구분

학력·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은 전공학과와 경력내용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 하되, 해당전공학과와 범위 및 경력인정 방법 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나. 인정범위

구분	학력·경력기준	국가기술자격기준
특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구분	학력·경력기준	국가기술자격기준
중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 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

*** 비 고**

1. 위 표의 학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전력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력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발전병과·시설병과에서 근무한 자를 말한다.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을 인정범위: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4조 제1항 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고급감리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감리원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감리원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기술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3.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감리원의 해당경력 산정은 전력기술인 해당경력산정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감리원의 배치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공사종류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송·변·배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	

공사종류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수전·구내배전· 가로등·전력사용 설비·기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	

*** 비 고**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감리원의 배치인원의 수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체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감리원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에정가격의 88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감리원의 수보다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설계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31조 제1항 관련)

종 류	등 록 기 준			영 업 범 위
	기술인력(명)	사 무 실	자 본 금	
종합설계 사무소	발송배전기술사·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중 2명, 설계사4명, 설계보조자 4명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2억원 이상(협회 출자증권 300좌 포함)	제21조제1항제1호내 지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전문 설계 사무소	1종 전기분야기술사 1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5천만원 이상(협 회출자증권 100좌 포함)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중 해당 기술사 업무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천만원 이상(협 회출자증권 50좌 포함)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 비 고**

- 종합설계 사무소의 설계사는 1급설계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보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나 전기분야 기능사2급 이상의 자격자이어야 한다.

[별표 5]

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31조 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업무범위

종 류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영업범위
종합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 감리원 2인 이상,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감리원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2억원 이상 (협회출자증권 300좌 포함)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감리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5천만원 이상 (협회출자증권 80좌 포함)	발·변전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 미만, 50만볼트 미만,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 1만킬로와트 미만의 수전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보유장비 기준

장 비 명	보유수량		장 비 명	보유수량	
	종 합	전 문		종 합	전 문
절연저항측정기(250V)	3	1	접지저항측정기	3	1
절연저항측정기(500V)	3	1	축크온메타	3	1
절연저항측정기(1,000V)	3	1	고압, 특고압검전기	3	1
절연저항측정기(10,000V)	1	1	저압검전기	3	1
			제전기시험기	1	
			로기스	3	1
			마이크로메타	3	1
			멀티테스타	3	1
			조도계	1	1

[별표 6]

과태료 처분의 기준(제35조 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장제1호	50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자	법 제30조 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전력기술인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6호	100만원

[별표 1]

해당경력 산정기준(제11조 관련)

1. 학력·자격 취득후 경력기간을 100%적용하는 경력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 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로써 전기에 관한 업무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병과를 받은 자
- 교육법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
-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의 전력기술 업무

2. 학력·자격 취득후 경력기간을 80% 적용하는 경력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 등 기술업무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중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 등의 기술업무
- 계량법에 의한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 공무원법에 의한 통신직렬(전자포함)에 보직된 자로써 전기통신·전자기술에 관한 업무
-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3. 학력·자격 취득전 경력기간을 50% 적용하는 경력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경력

[별표 2]

전력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13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문	업무 정지기간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공사 또는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또는 대여받은 때	영 제13조제1항제1호	대여 또는 대여 받은 기간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영 제13조제1항제2호	2월
3.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전력시설물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영 제13조제1항제3호	1월
4.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때	영 제13조제1항제4호	2월
5. 공사감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영 제13조제1항제5호	2월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한 때	영 제13조제1항제6호	1월
7.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영 제13조제1항제7호	2월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영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영 제13조제1항제9호	"

[별표 3]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문	업무 정지기간
1.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가. 주요 시설물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나. 인근의 주요시설물의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영 제29조제1항제1호	6월 2월
2.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전력시설물자재를 사용하여 시	영 제29조제1항제2호	3월

위 반 행 위	해 당 조 문	업 무 정 지 기 간
공한 때		
3. 품질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공사사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영 제29조제1항제3호	2월
4. 안전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가.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영 제29조제1항제4호	3월 1월
5. 전력시설물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을 때	영 제29조제1항제5호	2월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사업자가 설계도서없이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가. 설계도서없이 공사하도록 하게 한 때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아니한 때	영 제29조제1항제6호	2월 1월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 수첩을 대여한 때	영 제29조제1항제7호	6월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을 때	영 제29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9.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영 제29조제1항제9호	”
10. 공사완료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하자 발생원인이 감리용역부실로 판단될 때	영 제29조제1항제10호	2월

**전기절약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지혜를 생활화 합시다.**